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26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6 December 2018

Person in charge : Park Yun-chan

**TECHNICAL  
INFORMATION**

NO. 2018-ETC-10(K)

**Subject : EU 선박재활용 규정 시행**

2013년 12월 30일 발효된 EU 선박재활용 규정(이하 “EUSRR“이라 함)에 대해 우리선급 기술정보 (유럽연합 선박재활용 규정 발효 안내, [2013-ETC-14](#))를 통해 이미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동 규정의 일반 적용일(2018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 및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

- 1) EU 회원국 국적선 선박
- 2) EU 항구에 정박 또는 묘박하는 제 3국적선 선박
- 3) 적용 제외
  - 군함, 국가 소유로 정부의 비상업적 서비스를 위해 운항되는 선박
  - 500 GT 미만인 선박
  - EU 관할 영해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2. 적용시기**

2014년 12월 31일 ~	1) EU에서 승인한 재활용시설 목록(이하 "EU List"라 함) 공표(2016년 12월 19일) 이후에 해체·재활용에 들어가는 선박은, 해체·재활용 전 유해물질목록(이하 “IHM”이라 함)을 작성 및 증서 비치해야 함. (Art. 5.2) 2) EU에서 승인한 선박재활용시설 적용 규정 (Art.13~16)
2018년 12월 31일 ~	<b>[규정 적용]</b> 1) 첨부의 EUSRR 부속서 I 및 II에 명시된 유해물질의 선내 설치/사용 금지 또는 제한 (Art. 4)

	2) EU 국적의 신조선*은 IHM Part 1 작성·유지 및 증서를 선내 비치해야 함. (Art.5.1) 3) 재활용 예정인 EU 국적선은 EU List에 등재된 재활용시설에서만 해체·재활용해야하며, 재활용준비증서를 발행하여야 함. (Art. 6.2.a 및 Art. 9.9)
2020년 12월 31일 ~	1) EU 국적 현존선은 IHM Part 1 작성·유지 및 증서를 선내 비치해야 함. (Art. 5.2) 2) EU에 기항/요박하는 제3국적 선박은 IHM Part 1 작성·유지 및 적합확인서를 선내 비치해야 함. (Art. 12.1)

- \* 신조선 : a) 규정 적용일(2018년 12월 31일) 이후 건조계약 체결  
 b) 건조계약일이 없는 경우, 규정 적용일 6개월 후부터 용골 거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c) 규정 적용일 30개월 후부터 인도되는 선박

### 3. EUSR과 선박재활용협약(Hong Kong convention, 이하 “HKC”이라함)의 주요 차이점

- 1) 유해물질목록의 개발과 관련한 EUSR의 요건들은 사실 대부분은 HKC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규에 따라 작성된 유해물질목록은 관련 IMO 지침 (MEPC.Res.269(68))을 따라야 하지만 EU법규에는 협약보다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해물질목록 또한 IMO 지침(MEPC.Res.269(68))에 명시된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동 포맷은 SRR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해물질목록으로 개발된 것 이어야 하며, 이는 유해물질 목록은 EUSR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물질인 PFOS 및 HBCDD를 반영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외 적용시기 및 차이점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HM	EUSR			HKC
	EU 국적선		Non EU 국적선	
	신선	현존선		
HM* \ 적용일	2018.12.31	2020.12.31	2020.12.31	발효전
PFOS <sup>1)</sup>	○	○	N/A	N/A
HBCDD <sup>2)</sup>	○	N/A**	N/A**	N/A
Certificate	EUSR에 따른 유해물질증서 (Inventory Certificate)		HKC에 따른 적합확인서 (Statement of Compliance)	

\* HM : Hazardous Material (유해물질) \*\* 신규 설치/사용 시 적용

1)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 과불화옥탄술포산

2) HBCDD (Brominated Flame Retardant)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 4. IHM Part I 개발 및 증서 발행

- 1) EUSRR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동 규정의 각 조항에 따라 IHM Part 1과 관련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선주 및 선박운항관계자들께서는 동 기술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IHM Part 1 및 증서를 각 적용일 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IHM 개발과 관련해서는 첨부의 IMO 지침서 및 EMSA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HM Part 1은 우리선급 환경배관팀에서 승인하고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배관팀 / Email : [piring@krs.co.kr](mailto:piring@krs.co.kr) / Fax : 070-8799-8519
  - IHM Part 1이 승인되면, 가까운 지부에 증서(또는 적합확인서) 발행을 위해 최초검사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Reg.(EU) No. 1257/2013 on Ship Recycling ----- 1 Copy
2. Res. MEPC 269(68) ----- 1 Copy
3. EMSA Best Practice Guidance on the IHM ----- 1 Copy

협약본부장



배부처 : KR 검사원, 선주 및 운항 관계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